

삼호읍 종합감사 결과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삼호읍
- 감사기간 : 2019. 05. 21. ~ 05. 24. (4일간)
- 대상기간 : 2017. 05. 23. ~ 2019. 05. 20. (2개년)
- 감사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 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일반행정 분야	당직(일직) 근무자 근무시간 미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군 지방공무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 (당직의 구분 및 수당) 규정에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삼호읍에서는 위와 같이 당직(일직)근무자가 09:00이후에 출근하여 무인경비시스템을 해제하거나 18:00 이전에 세트하고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09:00~18:00)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영암군 지방공무원 당직근무규칙 제3조】
세출분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 미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삼호읍에서는 2017년 공사 1건에 대해 수입 인지 20,000원을 미징구하였고, 공사계약 체결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서 2018년 공사 2건에 대해 585,000원의 지역개발공채를 과소 징구한 사실이 있음 【인지세법 제3조 및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세무분야	주민세(재산분, 법인 균등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군사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납부한 50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조사하지 않고, 군에 부과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주민세(재산분, 법인균등분) 88건 23,875,900원을 누락하여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영암군 사무분장규정 및 재무과-17356(2018.7.3.)호】
	취득세(가설건축물) 신고 · 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영암군사무분장규정」 등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면 신고·납부 안내하고, 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 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지방세법 제20조 및 영암군사무분장규정】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사회복지 분야	사망자에 대한 장애인등록증(복지 카드) 회수 및 폐기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장애인 중 사망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게 되어 있음에도 삼호읍에서는 2017~2019년에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사망으로 확인된 장애인 37명 중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18명에 대하여 장애인등록증을 회수 및 폐기 또는 반환통보서를 송달한 사실이 없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자의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라 수급자 중 급여관리가 필요한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경우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여 공과금 등은 자동이체, 급여지출은 체크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적 여건에 따라 현금지출도 허용하고 있으나 2017-2018년 급여관리 실태점검 결과 급여관리 대상자 중 1명만 체크카드 사용 중이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 지출영수증 증빙내역이 부실한 대상자가 5명으로 의사무능력자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
농업분야	가축 통계조사 실시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축통계조사는 관내 가축의 사육규모, 성별, 연령별 사육현황을 파악하여 가축 방역사업 구축과 수급 안정 대책을 비롯한 각종 축산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업무로 정획을 기하기 위하여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마을담당 공무원이 농가 방문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삼호읍에서는 2018년 상·하반기 가축통계 조사 시 마을담당 공무원과 마을이장 협조도 없이 가축 통계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농업통계조사규칙 및 실시 요령】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분야	농지이용 실태조사 업무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호읍에서는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후 마을이장의 안내를 받아 취득한 농지에 대한 자경여부 등 농지이용실태를 면밀히 조사해야 함에도, 조사계획 미수립, 기초자료 미확보 등으로 실태조사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농지법 제10조 및 동법 제49조 제2항, 동법 제54조】
	2017년 다목적 소형 농기계구입 지원 사업 사후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농기계 및 유통 시설확충 지원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FTA, DDA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불안감 해소 및 생산비 절감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농업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시설물 지원 후 사후 관리 기간(5년)중 보조금으로 지원된 농기계 장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사후관리대장 비치 및 년 1회이상 활용사항 점검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 삼호읍에서는 2017년 지원된 다목적 소형 농기계지원 사업에 대해 2017 ~ 현재까지 점검관리를 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친환경농업과 -6808(2017.4.26.)호, 삼호읍-11659(2017.6.20.)호】
건설도시 분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및 인수·인계 처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호읍에서는 상기 『삼호 산호정마을 농로포장공사』 외 6개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352ton에 대하여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처리한 폐기물에 대하여 전산입력 하여야 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18조, 제19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 분야	소규모 자갈깔기사업 자재단가 설계 반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계서 작성시 자재 품질 및 규격에 맞는 자재중 단가를 비교하여 가장 낮은 자재를 구매하여야 하며,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한경쟁입찰의 집행) 제5조(제한기준)에 의거하여 자재등 구입시 관내 업체의 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삼호읍에서는 『삼호 저두마을 자갈깔기공사』 외 2건을 추진함에 있어 자갈 깔기공사의 주 자재인 보조기층을 삼호읍에 납품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시 나주●● 석산 1개 업체만 견적을 받아 반영하였음. 【재무회계규칙 제3조 및 제 5조】
	농경지유지관리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호읍에서는 『삼호 동역마을 담진입로 설치공사』를 시행 및 준공하면서 레미콘 수량($90m^3$)은 공사비에 반영하고 할증(2%)을 포함한 수량 $92m^3$는 관급자재에 반영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나, 설계서에 할증($2m^3$)을 포함한 수량이 과다하게 설계된 것을 감독자 및 시공사는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됨 ● 따라서 공사감독은 준공 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 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26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하였음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공사감독자 업무지침】
	주민숙원사업 준공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삼호읍에서는 『삼호 서창초등학교뒤 수로관 설치공사』를 시행 및 준공하면서 이중벽관 (D150mm) 부설을 위한 전기융착식 접합은 기본 길이 6m마다 접합($60m/6=10$개소) 하도록 되어있으나 설계시 3m기준($60m/3m=20$개소)으로 과다 설계된 것을 감독자 및 시공사는 확인하지 않고 준공 처리 되었음 ● 따라서 공사감독은 준공전 설계변경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나,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당초 계약 금액대로 집행하여 제작비를 포함한 총 금액 163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음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 제2항 및 공사감독자 업무지침】